

# 예산총칙

2024년도 추경 2 회

제 1 조 2024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구 분	세입·세출예산총액	일시차입한도액
합 계	618,519,704	18,555,591
일반회계	599,867,159	17,996,015
특별회계	18,652,545	559,576
기타특별회계	18,652,545	559,576
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	347,674	10,430
의료급여기금	461,369	13,841
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	110,014	3,300
지하수관리	34,648	1,039
기반시설	368,814	11,064
주차장	17,330,026	519,901

제 2 조 세입·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"세입·세출 예산"과 같다.

제 3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"계속비사업조서"와 같다.

제 4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"명시이월사업조서"와 같다.

제 5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5,608,191천원으로 한다.

제 6 조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25,2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7 조 회계연도 중의 보조금, 교부금(세)은 예산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의회에 사후 보고한다.

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,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간의 경비,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, 상환금(차입금, 예수금) 상호간에는 이용할 수 있다.